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5. 16
조례 제484호]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71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산산림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2022. 12. 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사항
3. 회의 진행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현지 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서면 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2. 12. 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산림담당”을 “산림팀장”으로 한다.

㉕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2016. 12. 23 조례 제71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림공원사업소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